

2018년 1월 18 일 Vol. 18 No. 2

ISSN 1976-0515

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조동희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부연구위원 (dhjoe@kiep.go.kr, 044-414-1123)



차례

1. 브렉시트 협상 경과
2. 전반부 협상의 주요 결과
3. 후반부 협상의 주요 안건 및 전망

주요 내용

- ▶ EU 정상회의는 영국의 EU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룬 브렉시트 협상 전반부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탈퇴 후 EU·영국 관계 및 이행기(transition period)를 다룰 후반부 협상 개시를 지시
 - 영국이 2017년 3월 29일에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양측은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에 의거한 2년간의 탈퇴협상을 시작하였음.
 - 영국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와 탈퇴 후 관계를 동시에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전자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만 후자를 논의할 수 있다는 EU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협상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었음.
 - 2017년 12월 15일 개최된 EU 정상회의는 양측 협상단의 공동 보고를 토대로 전반부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탈퇴 후 관계 및 이행기에 대한 협상 개시가 가능해졌음을 선언함.
- ▶ 전반부 협상의 주요 의제에 대해 양측은 ① 영국의 EU 탈퇴일 기준 자국 거주 상대국 국민에게 기준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②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를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③ 영국이 2019~20년 EU 예산상의 의무 및 2020년 말 기준 잔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
 - 전반부 협상의 주요 의제는 ① 자국 거주 상대국 국민의 거주국 내 권리 ②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③ 영국의 EU 가입 기간 중 발생한 EU 차원의 재정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정산 등임.
 - EU의 역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따라 약 320만 명의 EU 잔류국 국민이 영국에 거주 중이고 약 87만 명의 영국민이 EU 잔류국에 거주 중으로, 양측은 이들에게 기준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함.
 - 아일랜드 섬 내 국경은 현재의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 체제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
 - 부담금과 EU 기구에 대한 납입자본금 회수액 등을 상계하면 영국의 순부담액은 350~390억 파운드로 추정됨.
- ▶ 후반부 협상에서 양측은 2020년까지 현재의 경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할 전망이고, 탈퇴 후 경제관계의 형태로는 EU·캐나다 간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에 서비스분야 개방을 강화한 형태나 EEA(European Economic Area)에서 인적 이동의 자유를 뺀 형태가 거론되고 있음.

1. 브렉시트 협상 경과

■ 영국이 2017년 3월 29일에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양측은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에 따른 탈퇴협상에 돌입하였음.

- 메이(May) 영국 총리는 투스크(Tusk)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상임의장에게 보낸 공식서한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영국의 EU 탈퇴 의사를 통보¹⁾
-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탈퇴가 52%를 득표하였으며,²⁾ 국민투표 직후 취임한 메이 총리는 영국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였음.³⁾
-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규정한 TEU 제50조에 따라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는 탈퇴 의사 통보 후 2년이 지난 2019년 3월 29일에 소멸할 예정(글상자 1 참고)⁴⁾
- 단 영국을 포함한 EU 정상회의의 만장일치가 있을 경우 탈퇴 시점 연기 가능
-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양측의 비준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가을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함.⁵⁾

글상자 1. TEU 제50조 전문

제1항: 모든 회원국은 자국 내 헌법적 요구에 따라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탈퇴하기로 결정한 회원국은 EU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EU는 해당 회원국의 탈퇴 및 탈퇴 이후 EU와의 관계에 대한 협상을 EU 정상회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 탈퇴협정을 도출한다. 동 협상은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진행된다. 탈퇴협정에 대한 EU 측 승인은 EU 정상회의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동의를 얻은 후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내린다.

제3항: TEU와 TFEU는 해당 회원국이 동의하고 EU 정상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제2항의 탈퇴 의사 통보일로부터 2년 내에 탈퇴협정이 발효될 경우에는 탈퇴협정 발효일부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 의사 통보 2년 경과 시점부터 해당 회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EU 정상회의 및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해당 회원국 대표는 자국의 EU 탈퇴와 관련된 EU 정상회의 및 EU 이사회의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가중다수결은 TFEU 제238조 제3항 b의 정의를 따른다.

제5항: 탈퇴한 회원국이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동 요청에 대한 처리는 제49조의 절차를 따른다.

자료: Article 50 TEU,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12012M/TXT>(검색일: 2017. 12. 16).

1) European Council(2017), "Statement by the European Council (Art. 50) on the UK notification," *Press release*. (March 29)

2) The Electoral Commission(2016), "Official result of the EU Referendum is declared by Electoral Commission in Manchester," *News release*. (June 24)

3) European Union(Notification of Withdrawal) Act 2017, c. 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7/9/contents/enacted/data.htm>(검색일: 2017. 12. 16).

4) European Council(2017), *GUIDELINES FOLLOWING THE UNITED KINGDOM'S NOTIFICATION UNDER ARTICLE 50 TEU*,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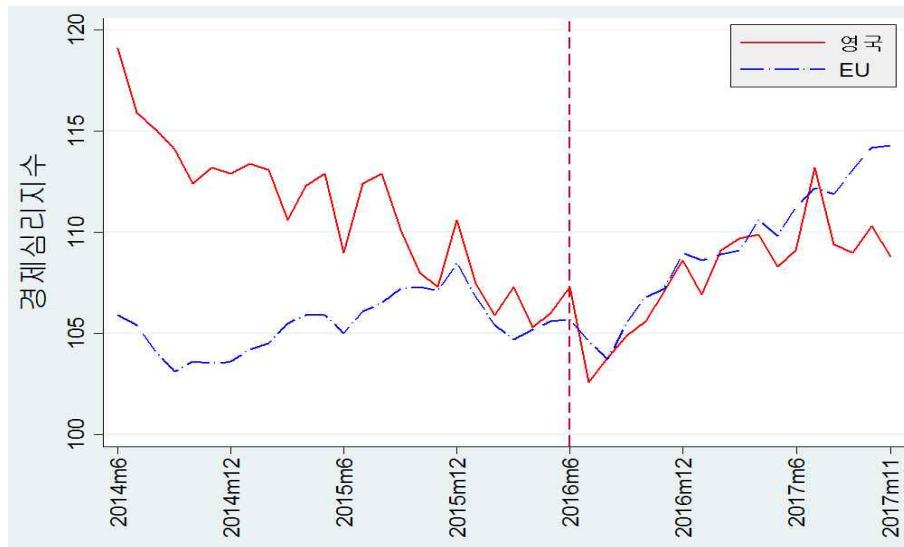
5) European Commission(2017), "Article 50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 Q&A," *Press release*. (March 29)

- EU 측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Article 50 Taskforce'가, 영국 측은 영국 정부의 EU 탈퇴부(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가 협상을 전담⁶⁾
- EU 측 협상 대표는 프랑스 정부 및 EU 집행위원회에서 다수의 고위직을 역임한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이고,⁷⁾ 영국 측 협상 대표는 영국 외무장관을 역임한 보수당 의원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임.⁸⁾

■ 영국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와 탈퇴 후 EU·영국 관계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이 충분히 진전된 후에야 탈퇴 후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는 EU의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의 협상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었음.

- 메이 총리는 탈퇴 후 EU·영국 관계에 대한 협상을 탈퇴협상 종료 전에 타결하여 탈퇴 후 경제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⁹⁾
- 탈퇴 후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투표 전후 영국의 경제심리가 급속하게 냉각(그림 1 참고)

그림 1.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후 영국 및 EU 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icator) 추이



주: 1) 장기평균을 100으로 표준화한 자수.
2) 끊긴 수직선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점 표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Business and consumer surveys DB,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indicators-statistics/economic-databases/business-and-consumer-surveys_en(검색일: 2017. 12. 18).

6) https://ec.europa.eu/info/departments/taskforce-article-50-negotiations-united-kingdom_en(검색일: 2017. 12. 16); <http://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xiting-the-european-union>(검색일: 2017. 12. 16).

7) European Commission(2016), "President Juncker appoints Michel Barnier as Chief Negotiator in charge of the Preparation and Conduct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under Article 50 of the TEU," *Press release*. (July 27)

8) <https://www.gov.uk/government/people/david-davis>(검색일: 2017. 12. 16).

9) Prime Minister's Office(2017), "The government's negotiating objectives for exiting the EU: PM speech," *Speech*. (January 17)

- 영국 경제·산업계는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고,¹⁰⁾ 메이 총리는 EU 측에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과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음.¹¹⁾
-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두 협상을 동시에 타결하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¹²⁾
- 반면 EU는 협상지침(negotiating guidelines)을 통해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 진 후에야 탈퇴 후 관계 및 두 관계 사이의 이행기(transition period)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음을 밝힘.¹³⁾
- TEU 제50조에 따라 탈퇴협상은 EU 정상회의 지침을 따르는데(글상자 1 참고), EU 정상회의는 2017년 4월 29일 발표한 협상지침에서 △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을 먼저 시작할 것과 △ EU 정상회의가 동 협상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경우 탈퇴 후 관계 및 두 관계 사이의 이행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전반부와 탈퇴 후 관계 및 이행기를 다루는 후반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2017년 6월 19일 1차 협상 아래 현재까지 총 6차례 협상은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었음.
- 협상은 4주 간격으로 열리고(표 1 참고), 전체회의(pleanary session)와 주요 안건별 분과회의(negotiating group meeting)로 구성됨.

표 1. 브렉시트 협상 전반부 일정

| 1차 협상 | 2차 협상 | 3차 협상 | 4차 협상 | 5차 협상 | 6차 협상 |
|----------------|-----------|-----------|-----------|-----------|-----------|
| (2017년) 6월 19일 | 7월 17~20일 | 8월 28~31일 | 9월 25~28일 | 10월 9~12일 | 11월 9~10일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COUNCIL (ARTICLE 50) on the state of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under Article 50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 양측 협상단은 2017년 12월 8일 발간한 공동보고서를 통해 전반부 협상의 합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12월 15일 개최된 EU 정상회의는 이를 토대로 전반부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후반부 협상 개시가 가능해졌음을 선언하였음.

- 2017년 12월 15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측 협상단은 12월 8일에 공동보고서를 발간하여 협상 전반부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하였고,¹⁴⁾ 메이 총리와 EU 집행위원회 융커(Junker) 위원장은 동 공동보고서를 지지하였음.¹⁵⁾

10) The Independent(2017. 2. 21), "Brexit: UK faces 'cliff edge of uncertainty' after EU departure unless Government secures transitional deal."

11) Prime Minister's Office(2017), "Prime Minister's letter to Donald Tusk triggering Article 50," *Correspondence*. (March 29)

12) Renwick(2017), "The Process of Brexit: What Comes Next?" Working Paper, UCL European Institute, p. 1.

13) European Council(2017), "European Council (Art. 50) guidelines for Brexit negotiations," *Press release*. (April 29)

14) Negotiator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2017), *Joint report from the negotiator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 on progress during phase 1 of negotiations under Article 50 TEU on the United Kingdom's orderly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15) European Commission(2017), "Brexit: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s sufficient progress to the European Council (Article 50)," *Press release*. (December 8)

- 이 공동보고서를 토대로 EU 집행위원회는 EU 정상회의에 전반부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과 후반부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음.¹⁶⁾
-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반부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고, 후반부 협상을 위한 지침을 2018년 초 채택할 계획임을 밝힘.¹⁷⁾
 - 이행기에 대한 협상지침과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지침을 각각 2018년 1월과 3월 중 채택할 예정

2. 전반부 협상의 주요 결과

■ 탈퇴 자체에 대한 협상의 주요 의제는 ① 영국 거주 EU 잔류국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권리 및 EU 잔류국 거주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 이후 거주국 내 권리 ②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③ 영국의 EU 가입기간 중 발생한 EU 차원의 재정 의무 및 권리 정산임.

가. 영국 거주 EU 잔류국 국민 및 EU 잔류국 거주 영국민의 권리 문제

■ [현황] EU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역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따라 2016년 기준 약 320만 명의 EU 잔류국 국민이 영국에 거주 중이고, 약 87만 명의 영국민이 EU 잔류국에 거주 중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지침 2004/38/EC는 EU 회원국 국민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거주할 수 있음을 규정(표 2 참고)

표 2.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지침 2004/38/EC의 관련 내용 요약

| 조항 | 목적 | 조건 |
|------|-----------|--|
| 제6조 | 3개월 이하 체류 | · 유효한 신분증 또는 여권 소지 |
| 제7조 | 3개월 초과 체류 | · 해당 국가에서 근무·학업 중 또는 ·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재정 상태 |
| 제16조 | 영주권 취득 | · 해당 국가에서 연속된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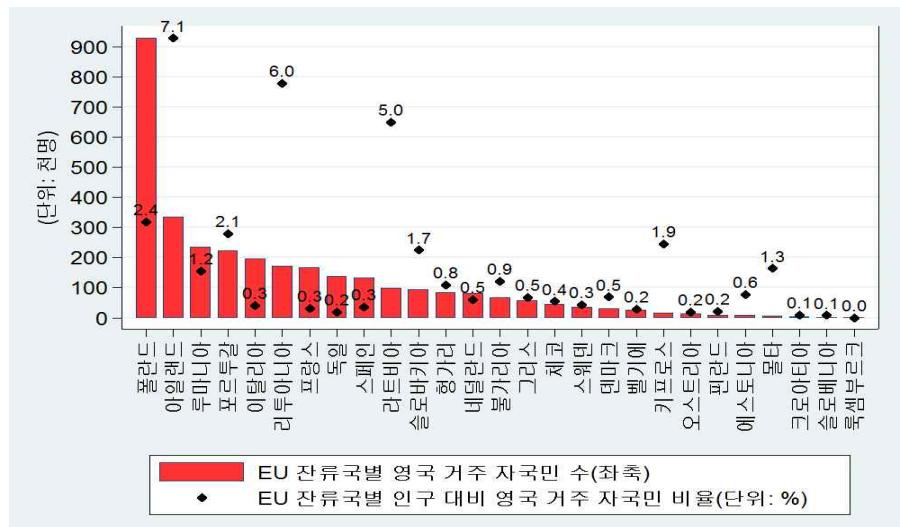
자료: Articles 6, 7 and 16 of Directive 2004/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on and their family members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4L0038>(검색일: 2018. 1. 3).

-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약 320만 명의 EU 잔류국 국민이 영국에 거주 중(그림 2 참고)

16) European Commission(201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COUNCIL (ARTICLE 50) on the state of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under Article 50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17) European Council(2017), *European Council (Art. 50) meeting (15 December 2017) - Guidelines*.

그림 2. EU 잔류국별 영국 거주 자국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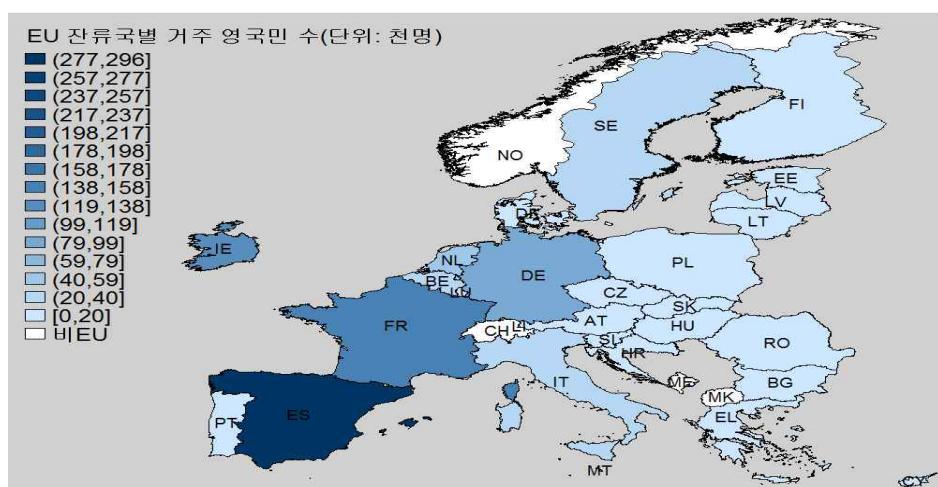


주: 2016년 1월 1일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Eurostat DB(검색일: 2018. 1. 2).

- 절대치로는 폴란드 국민이 약 93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인접국인 아일랜드(총인구의 7.1%)와 발트해의 리투아니아(6%), 라트비아(5%)의 경우 자국민의 상당수가 영국에 거주 중
 - 영국의 경우 약 87만 명(총인구의 1.3%)이 EU 잔류국에 거주 중
 -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별로는 스페인(약 30만 명)에 가장 많이 거주 중이고, 인접한 아일랜드(약 15만 명), 도버 해협 건너의 프랑스(약 15만 명), 독일(약 10만 명) 등에도 상당수 거주 중

그림 3. EU 잔류국 거주 영국민 분포



주: 1) 2016년 1월 1일 기준.

2) 국가별 영문 약자는 다음의 웹페이지 참고: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Glossary:Country_codes(검색일: 2018. 1. 2).

3) Stata 모듈 SPMAP을 이용해 그림.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 Eurostat DB(검색일: 2018.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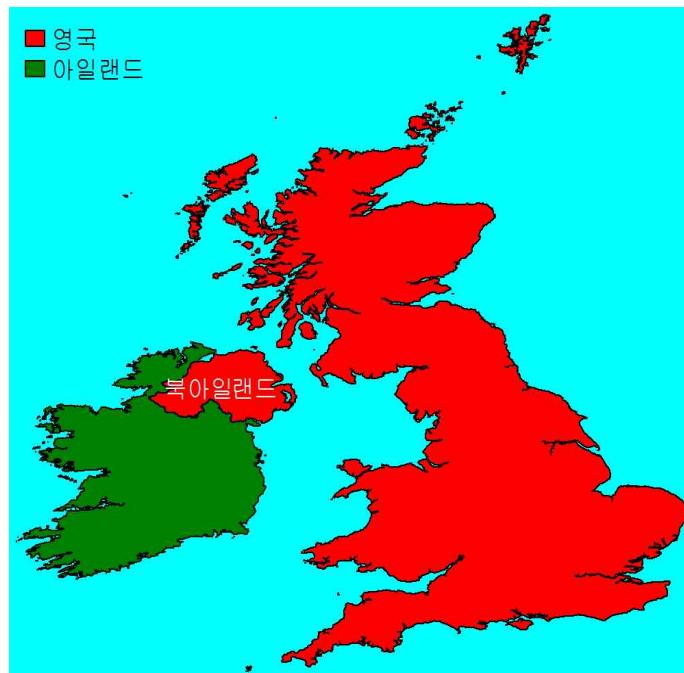
■ [주요 합의 내용] 영국의 EU 탈퇴일에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지침 2004/38/EC(앞의 표 2 참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 지침을 상응하는 권리 부여

- 탈퇴일 기준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체류 기간이 5년이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한시적 거주권을 부여하고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영주권 취득 권리를 부여¹⁸⁾
- 탈퇴일 이전에 지침 제16조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추가적인 조건 없이 신규 영주권 취득 가능¹⁹⁾
- 또한 탈퇴일 기준 현존하는 가족구성원과 탈퇴 후 출생하거나 입양되는 자녀에게도 동일한 기준 적용²⁰⁾

나.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 [현황]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일랜드 섬 북동부에 위치한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속한 반면 나머지를 차지하는 아일랜드(Republic of Ireland)는 EU 잔류국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EU 이전부터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을 수립하여 양국간 국경 통제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음.

그림 4. 영국 및 아일랜드 지도



주: Stata 모듈 SPMAP을 이용해 그림.
자료: 저자 작성.

18) European Commission(2017), *Citizens' rights*, Items 10 and 12.

19) *Ibid.*, Item 36.

20) *Ibid.*, Item 5.

- 1922년 아일랜드 독립국(Irish Free State) 수립과 함께 시작된 공동여행구역은 현재 영국 본토, 아일랜드, 맨 섬(Isle of Man), 채널 제도(Channel Islands)로 구성되고, 해당 국민들은 공동여행구역 안에서 출입국 심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음.²¹⁾
- 또한 육상 국경에서 출입국 관련 전수검사 미실시
- 이에 따라 연평균 약 1,100만 명이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통과하고 있고,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국경 이동도 빈번함.²²⁾
- 특히 차량을 이용한 국경 이동이 매우 빈번하여 2017년 5월 기준 연평균 11만 8천 대가 국경을 통과
- 국경간 통근·통학도 2011년 기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8,300명, 북아일랜드→아일랜드 6,500명 수준²³⁾

■ [주요 합의 내용] 현재와 같이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

- 특히 공동여행구역을 유지하고, EU 시민의 역내 이동 자유와 마찰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²⁴⁾
-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후반부 협상에서 논의 예정

다. EU 가입 기간 중 영국에 발생한 EU 차원의 재정 의무 및 권리 정산

■ [현황] EU는 다년도 지출예산인(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에 따라 2014~20년간 역내 국민총소득의 1% 수준인 약 1조 유로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²⁵⁾ 영국은 EU 재정의 주요 기여국임.

- EU는 회원국들로부터 ① 역외 교역에 대한 관세의 75%와 ② 통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0.3%를 받고, 이들과 기타 수입의 합을 초과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③ 국민총소득의 일부를 받음(그림 5 참고).²⁶⁾

21) McGuinness and Gower(2017), "The Common Travel Area, and the special status of Irish nationals in UK law," *Briefing Paper*, Number 1776, House of Commons Library, pp. 4-6.

22) HM Government, *Additional Data Paper: Common Travel Area Data and Statistics*,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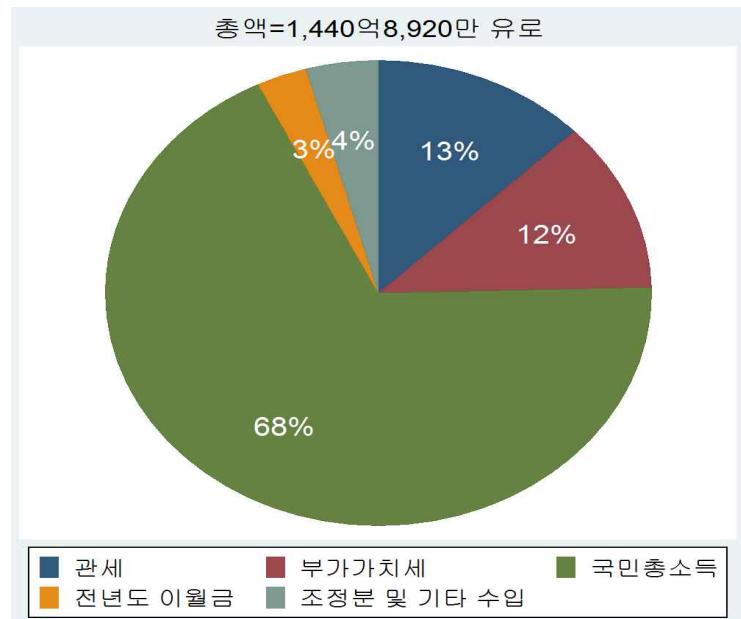
23) Central Statistics Office, and Northern Ireland Statistics and Research Agency(2014), *Census 2011: Ireland and Northern Ireland*, p. 60.

24) Negotiator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 *op. cit.*, Items 54 and 56.

25) 2011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2014-2020 and EU budget 2014 - The figures*, p. 7.

26) 부가가치세의 경우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으로부터는 2014~20년간 한시적으로 0.15%를 받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European Union Public Finance 5th Edition*, pp. 192-194.

그림 5. 2016년 EU 재정수입 수입원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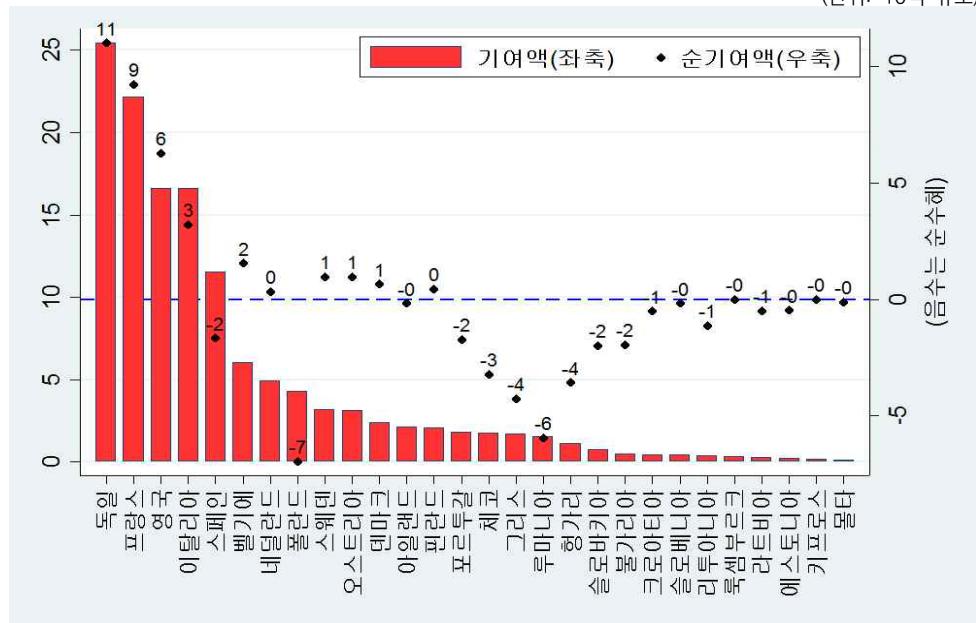


자료: <http://ec.europa.eu/budget/library/figures/internet-tables-all.xls>(검색일: 2018. 1. 5).

- [그림 6]에 나타나듯 영국은 EU 재정에 대한 주요 기여국으로, 2016년 기여액(약 166억 유로) 및 순기여액(약 63억 유로) 3위임.

그림 6. 2016년 EU 예산 회원국별 기여액 및 순기여·순수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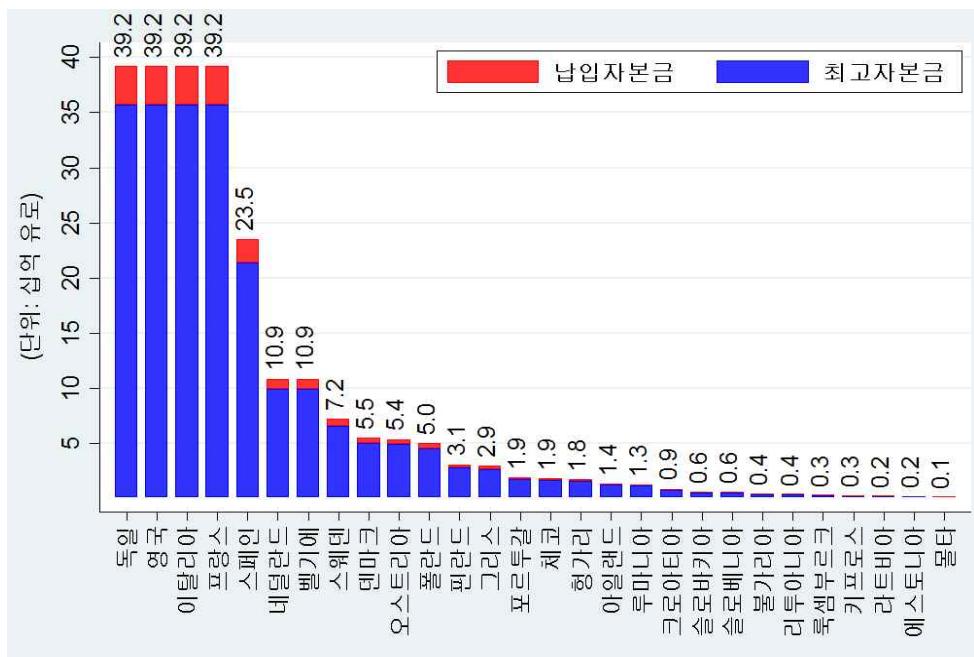
(단위: 10억 유로)



자료: <http://ec.europa.eu/budget/library/figures/internet-tables-all.xls>(검색일: 2018. 1. 5).

- 또한 영국은 EIB(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투자은행),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등 EU 금융기구의 대주주임.
- o [그림 7]에 나타나듯 영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EIB의 최대주주로, 2016년 말 기준 최고자본금(律吉資本金, callable capital) 약 357억 유로,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약 35억 유로임.

그림 7. 회원국별 EIB 자본금 규모



주: 2016년 기준.

자료: EIB(2017), *Financial Report 2016*, Note H.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o 또한 영란은행은 비(非)유로지역 중앙은행 중 가장 많은 약 5,600만 유로의 자본금을 ECB에 납입하였음.²⁷⁾

- [주요 합의 내용] 영국은 ① 2019~20년 EU 예산상의 의무를 기준과 같이 가지고, 2020년 말 기준 EU 예산상의 잔여 의무를 부담하며 ② 탈퇴일 기준 영국의 EIB 최고자본금만큼의 보증을 제공하고, EIB, ECB 등에 대한 납입자본금을 회수

- 영국은 2019~20년 EU 예산에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이 기여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남아있는 예산상의 의무를 부담²⁸⁾
- o 관련 금융거래는 유로화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후반부 협상에서 다룰 예정
- o 또한 2014~20년 다년도 지출예산안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기준과 같이 참여

27) <https://www.ecb.europa.eu/ecb/orga/capital/html/index.en.html>(검색일: 2018. 1. 8).

28) Negotiator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2017), *op. cit.*, Items 59-70.

- EIB에 대해서는 탈퇴일 기준 최고자본금과 같은 금액의 보증을 제공하고, 납입자본금은 2019년 말부터 매년 1회씩 12년간 회수하며, ECB 납입자본금은 탈퇴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²⁹⁾
- 영국정부는 이러한 합의에 따른 자국의 순부담액을 350~390억 파운드로 추정³⁰⁾

3. 후반부 협상의 주요 안건 및 전망

■ [이행기]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을 탈퇴일 이전에 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양측은 이행기 협상에 우선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EU의 다년도 지출예산안이 끝나는 2020년 말까지 현재와 같은 EU·영국 경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할 전망

- 이행기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이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한시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의미³¹⁾
 - 특히 해당 기간 동안 △ 역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이동의 자유 △ EU의 통상정책 △ EU 차원의 행정 및 사법 체계 등이 기존과 같이 영국에 적용될 전망
 - 반면에 EU 기관 및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영국의 참여는 불가능할 전망
- 영국의 탈퇴 예정일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을 탈퇴 일 이전에 체결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인 가운데,³²⁾ 양측은 급격한 관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기를 두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³³⁾
- 메이 총리는 2년의 이행기를 제안했으나 EU는 2020년을 넘기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이 EU의 다년도 지출예산안 종료 시점인 2020년까지만 EU 예산에 참여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이행기는 탈퇴일부터 2020년 말까지가 될 전망³⁴⁾
- 한편 EU 정상회의는 이행기 협상에 대한 지침을 2018년 1월 중 발표할 예정³⁵⁾

■ [탈퇴 후 EU·영국 관계] 높은 상호의존도에 따라 양측은 긴밀한 경제관계 유지를 원하지만 단일시장 접근의 조건인 4대 이동의 자유가 불가분하다는 EU 입장과 인적 이동 자유를 거부하는 영국 입장 간 대립으로 탈퇴 후 관계는 현재보다 약화될 전망인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EU가 캐나다와 체결한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에 서비스분야 개방을 강화한 형태가 될 가능성성이 높음.

29) *Ibid.*, Items 74-82.

30) HC Deb 11 December 2017, col 30, <https://goo.gl/jzGybt>(검색일: 2018. 1. 8).

31) European Council(2017), *European Council (Art. 50) meeting (15 December 2017) - Guidelines*. Item 4.

32) Renwick(2017), "The Process of Brexit: What Comes Next?" Working Paper, UCL European Institute,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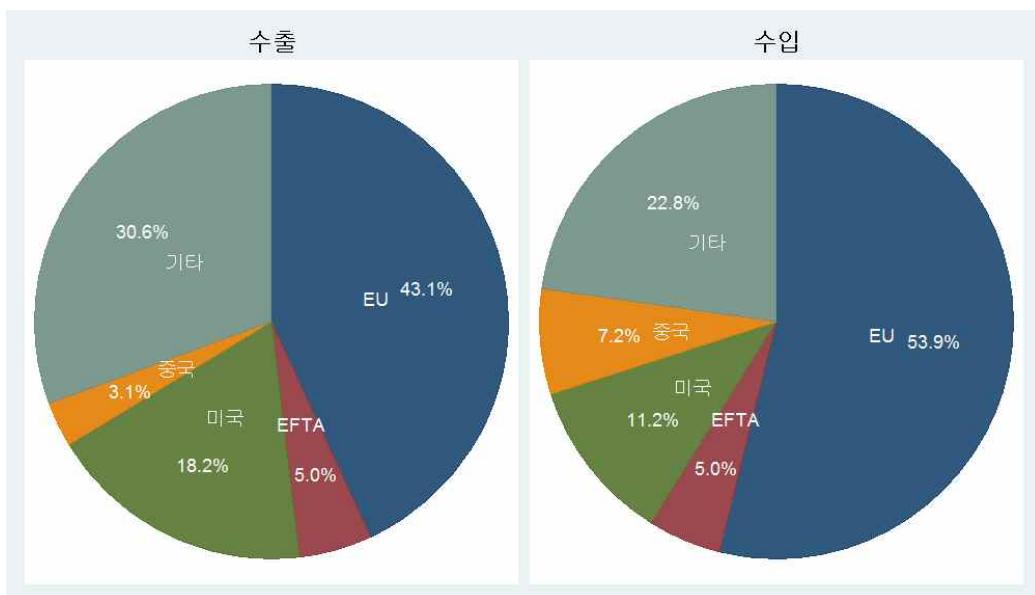
33) Prime Minister's Office(2017), "PM's Florence speech: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UK and the EU," *Speech*. (September 22); European Council, *op. cit.*, Item 3.

34) The Guardian(2017. 12. 20), "Brexit transition period should end on 31 December 2020, says EU."

35) European Council, *op. cit.*, Item 5.

- 기술적으로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정은 영국의 탈퇴 이후에 체결될 수 있으나, 후반부 협상에서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³⁶⁾
- 영국정부는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³⁷⁾ 이에 따라 탈퇴 후 EU-영국 간 경제적 통합 수준은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³⁸⁾
- [그림 8]이 나타내듯이 EU는 영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압도적인 최대 교역 상대이므로 EU-영국 간 경제적 통합 수준 약화는 영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전망

그림 8. 영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EU의 비중



주: 2016년 기준.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7), *The Pink Book: 2017*, Chapter 9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특히 수출 하락에 따른 일자리 및 소득 감소와 수입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관련 문헌은 브렉시트로 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장기적으로 1~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³⁹⁾
- 이에 따라 영국정부도 현 상태에 가까운 경제관계를 원하지만 국민투표 결과에 담긴 민심을 인적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역내 4대 이동의 자유에 반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4대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단일시장 잔류는 포기한다는 입장임.⁴⁰⁾
- 4대 이동의 자유가 불가분하다는 EU 입장과 인적 이동의 자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영국 입장에 따라 전문가들은 탈퇴 후 경제관계가 CETA에 서비스분야 개방을 강화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⁴¹⁾

36) European Council, *op. cit.*, Item 6.

37) Prime Minister's Office(2017), "PM's Florence speech: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UK and the EU," *Speech*. (September 22)

38) European Council, *op. cit.*, Item 7.

39) Sampson(2017), "Brexit: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Disintegr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1, No. 4, p. 164.

40) Prime Minister's Office(2017), "The government's negotiating objectives for exiting the EU: PM speech," *Speech*. (January 17)

- CETA는 EU가 비회원국과 양자 간에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나, 서비스분야의 개방 수준이 EU 역내에서보다 현저하게 낮고, 특히 영국에 중요한 금융 서비스의 패스포팅 권한(Passporting Right)이 없음.⁴²⁾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과 같이 비회원국으로 단일시장에 잔류하되 인적 이동은 제한하는 것도 거론되고는 있지만 4대 이동의 자유가 불가분하다는 EU 측 입장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됨.
- 한편 EU 정상회의는 탈퇴 후 관계에 대한 협상지침을 2018년 3월 중 발표할 예정⁴³⁾ **KIEP**

41) Demertzis and Sapir(2017), "Brexit, phase two (and beyond): The future of the EU-UK relationship," *Blog Post*, Bruegel, <http://bruegel.org/2017/12/brexit-phase-two-and-beyond-the-future-of-the-eu-uk-relationship>(검색일: 2018. 1. 11).

42) 패스포팅 권한은 한 국가에서 금융업 허가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별도의 허가 없이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EU 단일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임. EU 단일시장의 패스포팅 권한을 상실할 경우 런던은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 *The Financial Times*(2017. 1. 12), "Financial future after Brexit: passporting v equivalence."

43) European Council, *op. cit.*, Item 9.